

2024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
대구형 반도체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모집 공고
(반도체 연관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)

(사)대구경영자총협회는 대구광역시,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및 채용연계 지원을 위해 『대구형 반도체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』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9. .

(사)대구경영자총협회장

I 사업목적

- 대구 반도체산업은 대구시 신산업(IT, 로봇, 미래차 등)을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, 반도체 기업에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신산업의 성장과 고용으로 연계
- 이러한 반도체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의 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반도체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력 제고
- 특히, 지역 반도체산업 분야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산업의 성장동력 하락 우려
- 반도체산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희망 구직자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함으로써, 반도체산업 구인난 해소와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
II

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대구형 반도체 연관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

□ 사업내용 : 대구 반도체 연관산업 기업이 자체 채용을 통해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, 지급하는 기업 장려금
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|
| 신청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구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반도체 연관산업 범위*에 해당하는 산업 분류 코드를 보유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사업주 * 개발/설계(IT), 소재/부품, 기계/장비, 가공/처리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| 30명 지원 |
| 지원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참여신청 기업은 '24년 3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35세 이상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■ 채용 및 근로 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보험 가입된 자에 한함(외국인 제외) - 정규직 채용일부터 2개월 이상 고용유지 충족된 자 - 사업주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파견 근로자 등 제외 - 월 급여는 '24년 최저임금의 120% 수준 이상 지급 | |
| 지원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수준 :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100만원, 최대 10개월 1,000만원 지급 ■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| |
| 지원제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참여자가 채용 후 퇴사한 경우(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) 퇴사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■ 신청일 기준 참여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,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■ 대량고용변동 발생 기업의 신규 채용자 제외(참여신청 직전 3개월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→ 30명 이상 변동시 -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→ 10% 이상 변동시 | |
| 신청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기간 : 24. 03. 01.(금) ~ 24. 12. 31.(화) ■ 신청방법 : 대구경영자총협회 이메일(4605@dgef.or.kr) 또는 현장접수 ※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dgef.or.kr) 회원공간 → 경총공지사항 참조 | |

Ⅲ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

1) 대구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반도체 연관산업 범위*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주

* 개발/설계(IT), 소재/부품, 기계/장비, 가공/처리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

* 분류(업종)코드 조회 및 제출

※ 분류(업종)코드 증빙서류 중 아래방법으로 제출

-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> 사업장 > 정보조회 >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> 관리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입력 후 고용업종 검색화면 캡처하여 제출

- 홈텍스 홈페이지 > 로그인 > my홈텍스 > 기타세무정보 >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 페이지 화면 제출

- 정부24 홈페이지 > 공장등록증 검색 > 신청서비스 공장등록증명 신청 > 회사정보 입력 > 공장등록정보조회 > 수령발급 선택 후 발급

- 반도체 관련 협력사 납품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(반도체 관련) 매출

2) 사업참여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*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, 일용근로자,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)

3) 지원제외 기업

①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※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최근 년도에 공표 중인 기업

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용보험법」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따라 부정 수급 처분 등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

④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/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⑤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□ 지원내용

- 1) 지원수준 : 지원대상자 1인당 월 100만원, 최대 1,000만원(최대 10개월 지원)
- 2) 지원한도 : 참여기업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
- 3) 지원기간 : '24년 3월 1일 ~ ' 24년 12월 31일 까지
 - ※ 단,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,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- 4) 반도체산업 일자리채움지원금 중복지원 가능
 - ※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채움지원금 요건에 부합할 경우, 신청 가능

□ 지원요건

- 1) 참여신청 기업은 '24. 3. 1. ~ '24. 9. 30.까지 35세 이상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

- ※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, 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(해당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)
- ※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의 '일경험(인턴형) 프로그램' 참여자는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도 참여가능
- ※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재직자 단계(학위연계형, P-Tech)는 정규직 신분으로 참여가능, 재학생 단계(도제학교, 전문대단계형, IPP)는 계약직 신분으로 참여불가

- (최소고용유지)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상 고용유지* 충족해야 하며,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,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음
 - * 고용유지는 고용보험자격 유지를 기준으로 판단

- ※ 고용유지기간인 2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, 1회차에 근로개월수 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하고,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

2) 근로조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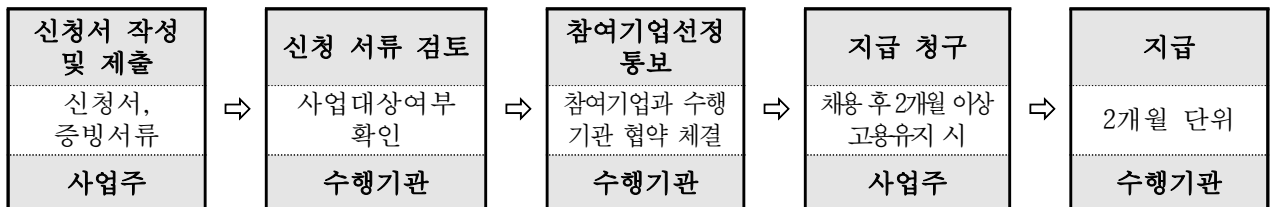
- 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- ②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120% 이상
 - '24년 최저임금 월급여* 2,060,740원, 120%는 2,472,888원(세전기준)
 - * 기본급+식비+자차운행비 등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적 급여로 포함, 초과 근로수당, 휴일근무수당 등 변동성 수당, 실비보상적 수당, 성과급 등 항목은 '월 급여'에서 제외(기타 상세한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따름)

3) 지원제외 근로자

- ①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
 - ※ 혼인 등으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,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제한
- ②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
- ③ 국내기업의 해외법인(또는 해외지사)의 근무(예정)자로 채용된 자
- ④ 근무시간,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·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
- ⑤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(채용일 이전 1년에 한함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 - ※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- ⑥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- ⑦ 외국인 근로자

□ 지원절차

1) 사업추진절차



2) 참여신청 및 지원금 지급시기

- ① (참여신청)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
- ② (참여안내) 신청서 접수기간 만료 후 참여기업 선정여부 통보
- ③ (지급시기) 2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확인 서류, 장려금 지급 직전 2개월 급여액 증빙서류와 지원금 신청서 제출

IV

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~ 2024년 12월 31일(화)까지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이메일 및 현장접수
- 선정안내 : 적격심사 후, 선정여부 통보
- 문의처

| 수행기관 | 이메일 | 유선전화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사)대구경영자총협회 (서구 서대구로 128) | 4605@dgef.or.kr | 053)560-7813 053)560-7814 |

필수 제출서류

| 단계 | No. | 내용 | 제출 부수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사업신청 | 1 | (서식1) 반도체 연관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신청서 | 1부 |
| | 2 | (서식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1부 |
| 채용자 명단 | 3 | (서식3) 정규직 채용(전환)자 명단 통보서 | 1부 |
| 지원금 신청 | 4 | (서식5) 반도체 연관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| 1부 |

※ 대상 근로자 퇴사 시 “(서식4) 중도퇴사자 명단 통보서” 10명업일 이내 제출

기타사항

- 1)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2) 신청자격요건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(사)대구경영자총협회